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29 |
|------|----|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 비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2006. 5. 1 ~ 5. 24 실시결과 의견없음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유형 또는 거주·점유 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별표 1 예시도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

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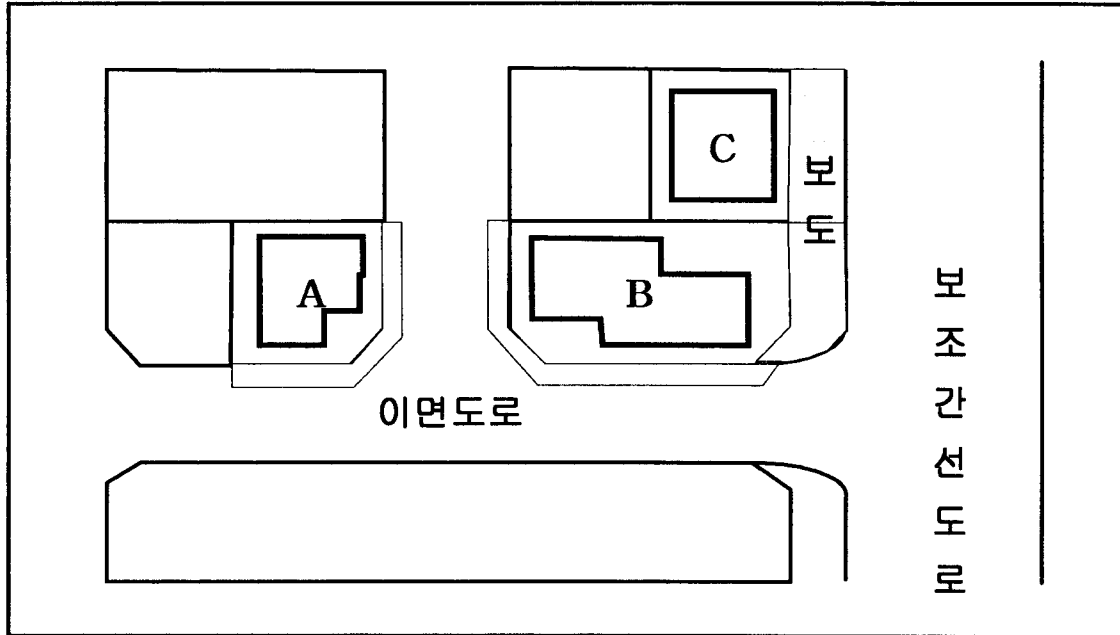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제5조 관련)



-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설해발생에 대비하여 설해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해예방 조직의 정비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강구
3. 설해대비용 물자와 자재 비축·관리 및 장비의 확보
4. 고립·눈사태·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의 지정·관리
5. 산악지역 등산로에 대한 통제구역의 지정·관리
6. 설해대책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7. 농·수산시설의 설해경감대책 강구
8. 그 밖에 설해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해예방 및 경감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